

노동안전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보완하되, 산업보건과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 제도의 개편(제34조 및 제35조)

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제36조 및 제36조의2 신설)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 의무 부과(제39조의2 신설 및 제72조제1항제1호)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사항조정(제48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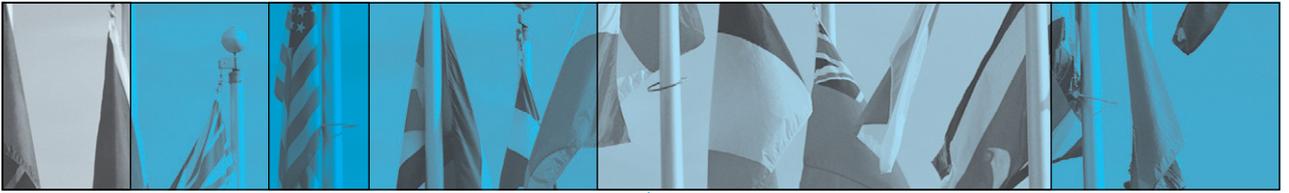
노동부 - 검찰 합동점검 결과, 94.8%가 범위안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올해 6월 한달 동안 전국 1,082개 사업장을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94.8%인 1,026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58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5억6백9십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A종합건설 신도립현장에 대하여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1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안전방호장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22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200대에 대하여는 사용을 중지토록 하였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570건(70.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225건(6.2%),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에 예방조치 미흡이 189건(5.2%) 순으로 나타났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가 없이 석면 철거한 32곳 사법처리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

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 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해를 낮은 건설업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 2007년 자율안전관리업체 현황

∴ 시공능력 평가액순위 100위 이내(47개 업체)

(주)대우건설,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대림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롯데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금호산업(주), (주)한진중공업, 쌍용건설(주), (주)한화건설, 경남기업(주), 두산중공업(주), 코오롱건설(주), (주)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벽산건설(주), 삼성중공업(주), 삼부토건(주), 한라건설(주), 고려개발(주), 한신공영(주), (주)엠코, 신성건설(주), (주)부영, 신세계건설(주), 남양건설(주), 대우자동차판매(주), 이수건설(주), 남광토건(주), 동문건설(주), (주)삼호, (주)신일, 진흥기업(주), 우미건설(주), (주)반도건설, (주)에이치에이치아이, 신원종합개발(주), 한솔건설(주), 씨제이개발(주), (주)동일토건, 일성건설(주), (주)고속도로관리공단, (주)신안, (주)삼한까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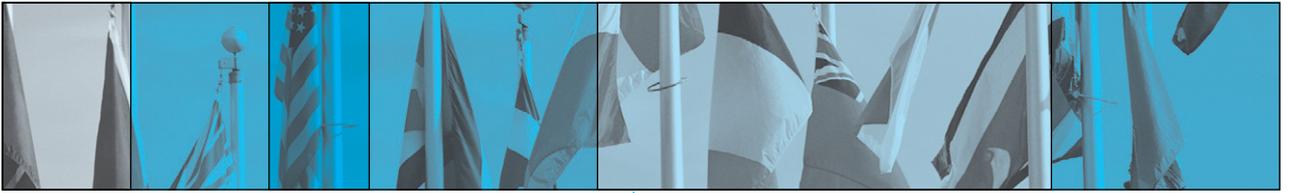
∴ 시공능력 평가액순위 200위 이내(27개 업체)

(주)롯데기공, (주)우미개발, 현대중공업(주), (주)이테크건설, 태평양개발(주), 남광건설(주), (주)한양, 대보건설(주), 동원시스템즈(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주)협성종합건설, (주)금강주택, 정우개발(주), 한국건설(주), (주)서광건설산업, 대방건설(주), 태동건설(주), 남도건설(주), 신도산업개발(주), 세종건설(주), 화일종합건설(주), 가산토건(주), (주)일신진흥, (주)모아종합건설, 갑을건설(주), (주)우미토건, 유진기업(주)

(주)대우건설, (주)롯데기공 등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74곳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대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환산 재해율 이하인 업체 74개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2007. 8월~2008. 7월) 신규 건설공사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74개 건설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가 47개 업체, 100위 이상 200위 이내가 27개 업체로 100위 이내 업체가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07년 물리적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송영기)은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관내 사업장 중 2006년 상·하반기 및 200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물리적 인자(소음, 분진 등)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감독관 1인당 2개소로 총 10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자율적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자율 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하여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음, 분진의 노출기준초과 공정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 및 사후조치 여부, 호흡기보호프로그램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여부, 작업관련성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예방 조치여부, 근로자 보호구 착용 상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태,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며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을 명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2006년 상·하반기 및 200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장 건강 증진 활동을 강화하여 직업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07. 6. 1.부터 6. 29까지 관내(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 사업장 및 건설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부 검찰 안전보건합동점검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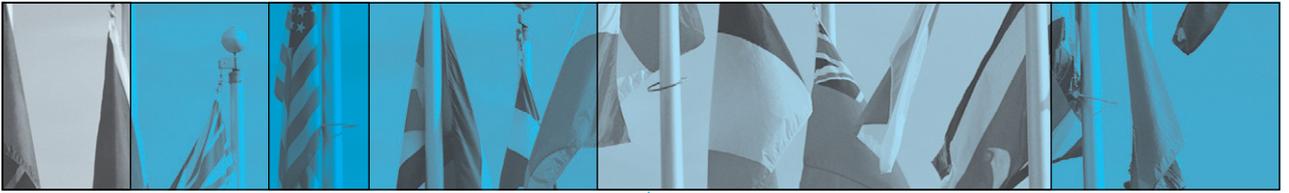
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건설현장 대표 2명과 법인을 입건하는 외에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합동점검의 대상 사업장은 산재취약업종으로써 재해가 다발하였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또는 장마철 침수·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초과하는 곳으로, 침수·붕괴·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 예방 대책, 타워크레인·리프트 등 건설용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추락·낙하·비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예방에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이행 실태, 안전관리 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방호선반 미설치 등 작업중 근로자의 추락·낙하·비래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강서구 공향동 소재 신축공사현장과 안전난간 미설치, 접지선 미설치 등 추락 및 감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아파트신축현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도가 심한 건설현장 대표(현장소장) 2명과 법인을 입건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유해·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대상 14개소 37건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시정지시하였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용 사업장을 위한 안전작업 매뉴얼 제작 및 배부 계획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송영기)은 지난 4월 『50인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제도 길잡이』를 제작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반을 안내한 데 이어 이달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용 사업장 안전작업 길잡이』를 제작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안전작업 매뉴얼은 다양한 사진과 함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와 점검사항,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자체검사,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 안전 수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히 항상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작업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이번 매뉴얼은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교육 시, 각 사업주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배부하고, 또한 담당 감독관의 각종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해당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청은 이번 안전작업 매뉴얼 제작을 통해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용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사용, 적정 검사 실시,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노동부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산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준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폭염대비 행동요령 외에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유리가공업)과 옥외사업장(건설·항만하역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사업장 지도·감독시 전기시설,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위험시설과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점검하고 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등을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석철)에서는 관내 건설현장 및 제조업 등 사업장에 관련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송부하였다.

산소결핍 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지청장 나문섭)은 지난 13일 산소결핍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두산건설(주) 등 관내 제조사업장, 건설현장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안전보건관계자 및 관리감독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권기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강원지도원 강사 지원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최근 오페수처리장, 지하 우수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올해 6월말까지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질식사하여 사망한 건수가 총 7건에 1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하절기 질식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